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. 2. 7.

예천군의회의장



1. 개정이유

-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천군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·통보 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변경(안 제2조제2항)
 - 월정수당을 매월 1,672,000원 지급 → 별표에 따라 지급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연 도	지 급 액
2020	매월 1,702,000원
2021 ~ 2022	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

※ 단, 월정수당 상한액은 연간 20,71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
3. 개정조례안

- 불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동법시행령 제33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과 같음
- 다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반영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결과 :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4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junu0920@korea.kr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1,672,000원으로 한다”를 “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여행”을 “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여행”을 “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연 도	지 급 액
2020	매월 1,702,000원
2021 ~ 2022	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

※ 단, 월정수당 상한액은 연간 20,71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<u>1,672,000 원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</u></p>
<p>제4조(여비 지급)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<u>여행</u>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여비 지급) ----- ----- ----- <u>출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외국에 <u>여행</u>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여비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<u>별표 1</u>에 따른다.</p>	<p>제6조(여비 지급기준) ----- ----- <u>별표 2</u>-----.</p>

<참고자료>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“심의회“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2. 여비: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